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현행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“인증”에서 “지정”으로 변경함(안 제2조제17항·제18항 및 제3조제2항제3호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)